

2019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문석호	044-201-1791
		사무관 임채홍	044-201-1792
		주무관 이병길	044-201-1797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6	'17	'18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65.0	55.5	54.3	63.3	'20.1	(당해년도 안전보험 가입건수 / 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천건)	92	60	79	93		보험가입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25,628	116,190	116,650	140,004
보 조	62,814	58,095	58,325	70,002
자부담	62,814	58,095	58,325	70,002

5. 사업 운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통계 생산 및 관리 등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이하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 NH농협손해보험

II.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 일반1형·일반2형은 만 15~87세, 일반3형·일반4형·일반5형·산재1형·산재2형은 만 15~84세
 -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2. 보험 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3.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만 15~87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 실시

4. 국고지원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이상 지원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5.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6. 보험상품 연구 개선

- 농금원과 보험사업자는 농작업재해와 농기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7. 통계생산 및 관리

- 농금원은 보험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 등에 활용
-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보험 통계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8.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9.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10.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는 단체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가입 내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전달

사업관리기관(농금원)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통계관리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14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8조)
 -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정책보험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 후 약정 체결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금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계획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 서류를 농금원에 제출

2. 사업준비 및 시행

사업관리기관(농금원)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추진
-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품개선회의”를 구성·운영
 - 조직구성: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사업자 등
 - 개최시기: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각 반기별 2회(단, 필요시 수시 개최)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합의
 - 보험료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보험 가입

가입자(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서면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 청약서 및 가입서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보험사업자는 가입자가 농업인임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 확인서 또는 산림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노력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

4.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농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

- 보험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사업관리기관(농금원)

-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 사업비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사업비 신청
 - 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농금원에 보고

6. 이행점검

사업관리기관(농금원)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태,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및 일정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보조금 사용 내역 등
 - 사업실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7. 제재

사업관리기관(농금원)

-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보험사업자 등에 요구

(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지체없이 제출)

사업시행기관(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8.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설문지 방법)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금원에 제출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칙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금원, 익년 3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농금원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부진항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보험사업자는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별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 -
주소			
담당자	직위		휴대전화
	성명		이메일

2.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상 신청액)
사업비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첨]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6	'17	'18	'19(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